

프랑스 도시 자영업자 사회보장제도 : 제도적 특징과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심 창 학*

I. 서론

1. 문제제기

현재 우리 나라 사회복지 분야에 있어서 주요 관심사 중의 하나는 사회보험 통합에 관한 논의가 될 것이다. 이에 대한 논의는 1998년 11월부터 통합추진 기획단이 운영되기 시작하여 지금도 계속 진행중이다. 외부의 관찰자가 보기에 우리나라 통합 논의는 두 가지 차원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 우선 보험간의 통합이다. 4대 보험을 중심으로 완전 통합, 2:2 통합, 특정 기관에 의한 보험 업무의 일괄관리 논의 등이 이에 속한다. 두 번째 통합 논의는 각 보험제도 내에서 가입자의 직업 및 직종에 따라 분리 운영되고 있는 제도 (본 논문에서는 이를 '체제'라 칭하기로 함)의 통합에 관한 것이다. 98년 10월에 있었던 의료 분야에 있어서 기존의 공, 교 의보조합과 지역의료의 통합이 이의 대표적인 경우라 할 것이다. 의료보험의 통합에 대해서, 정부 입장에 따르면 이는 더욱 확대되어 2000년도 1월에는 3대 의보조합 즉 직장, 공무원, 지역의료의 관리 조직의 통합, 2002년의 재정 통합을 통한 완전 통합이 이루어질 것이다 (중앙일보, 1999년 9월 18일자).

이렇듯 현재 우리나라 통합 논의는 보험간 통합과 보험내 통합이 진행됨으로써 경우에 따라서는 논의의 혼란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통합에 대한 기대도 그렇게 낙관적이지만은 아

* 경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닌 예상을 하게 한다.

마치 이를 반증이라도 하듯 지난 7월 13일 시작된 ‘국민연금, 의료보험료 납부 거부 서명 운동’은 서명자수가 8월에 100만명을 돌파 한 뒤 약 한달 후인 9월 말 현재 520만명에 이를 정도로 그 호응이 대단하다. 서명운동은 한국노총과 직장협의회 및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봉급자 보험료 과잉 부담 저지 및 사회보험 개혁 범국민 대책회의’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들의 주장을 보면 첫째, 국민연금제도 직장, 지역가입자 재정분리 및 기초연금제도 도입, 둘째 통합의료보험법안 시행 2년 연기, 셋째, 사회보험제도 4인 이하 전 사업장 확대 적용 등이다 (월간 복지 동향, 1999년 9월 : 50). 즉 보편주의 원칙에 입각한 사회보장 제도의 확대 적용은 찬성하나 반면 연금 및 의료보험 분야에 있어서 보험내 제도의 통합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반대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논의가 있어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고 통합 반대의 주체로서 직장협의회, 한국 노총 등의 임금 생활자뿐만 아니라 도시의 자영업자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한다. 전부는 아니지만 사회보장 가입 혹은 사회보험 통합에 대한 도시 자영업자의 부정적 입장은 지난 1999년 4월 1일의 ‘전국민 연금 시대’ 개막을 둘러싼 진통을 통해서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사회보험 통합에 있어서 도시 자영업자 집단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사회보장제도의 확대, 소득 파악 문제 등)등은 우리모두가 깊이 고민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회보험 통합 과정에 있어서 도시 자영업자의 ‘위치지움’ 문제는 비단 한국의 경우에만 볼 수 있는 현상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의 경우보다 훨씬 더 강한 형태로 사회보험 통합에 대한 도시 자영업자의 반대 입장과 직접적으로 사회 행동을 취하는 것을 목격할 수 있는데 이의 대표적 경우가 프랑스라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프랑스는 농업국가이면서 자영업자 중심 국가이기도 하다. 먼저 경제활동인구 대비 농업종사자 인구 분포를 보면 1995년 기준 현재, 그 비율은 약 8%이지만, 2차 세계대전 후에는 약 4백6십만 명으로 약 23%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도시 자영업자 인구 규모는 1995년 기준 약 7%인데 비해, 1945년 당시에는 3백2십만으로 15%을 차지하고 있었다. 더구나 농업 종사자 중 다수가 자영업자 임을 감안하면 프랑스 경제 및 사회에서 차지하는 자영업자 비중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도시의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보장 확대 적용에 있어서 문제가 되기 시작한 시점은 1945년 즉 제2차 세계대전 직후부터이다. 그 이전에는 도시 자영업자는 사회보장과는 무관한 상태에서 주로 개인저축, 민간보험회사에로의 가입을 통해 궁극적인 소득보장을 꾀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론부터 먼저 말하자면 연금부문에서는 1948년부터, 의료보험부문의 경우는 1966년의 관

련법 제정을 통해 사회보장에 가입하게 된다. 하지만 도시 자영업자에 대한 보편주의 원칙의 실현은 그들만의 보험운영제도(체제)의 형성을 통해 이루어진다. 즉 통합이 아닌 독자적인 제도 운영을 통해 보편주의 원칙이 실현된 것이다. 후술하겠지만 현재, 도시 자영업자의 사회보장제도는 임금생활자 사회보장제도(일반체계)와의 통합 여부를 기준 하여 볼 때 분야에 따라 양분되어 있다. 즉 의료 보험 및 연금 분야는 독자적인 제도(자율체제)로 운영되고 있고, 가족부양 및 임의가입 분야인 산재 및 직업병 분야는 일반체계에 가입되어 있다. 하지만 통합 문제와 관련하여 후자 분야는 비단 도시 자영업자 만이 아닌 전국민 혹은 관련 경제활동 인구에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과는 무관한 부문이고, 의료 및 연금 분야가 본 논문의 연구 대상이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기하고자 질문은 다음과 같다. 의료 및 연금 분야에 있어서 어떤 과정을 거쳐 도시 자영업자 고유의 사회보장제도 즉 자율체제가 형성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이를 위해 각 보험 분야의 자율체제 형성을 둘러싼 논쟁 및 논쟁의 주체들, 이들의 입장 등을 살펴며 이의 의미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기로 한다. 아울러 연금 및 의료 분야 제도 형성시의 공통점과 차이점도 알아본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은 도시 자영업자의 사회보장 가입 및 사회보험 통합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시사점을 찾아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단순 비교의 한계를 피하기 위해 우선 양국의 맥락을 먼저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사점 및 그 의미를 대해 살펴볼 것이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글의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다. 우선 현재 시행 중인 프랑스 도시 자영업자 사회보장 제도에 관한 개관 부분이다. 프랑스 사회보장 이해에 필요한 개념들을 먼저 살펴보고 도시 자영업자 사회보장 제도에 대해서 한국의 경우와 비교를 통해 알아봄으로써 이해를 돕고자 한다. 다음 순서는 도시 자영업자 사회보장제도의 형성과정과 그 특징 부분으로서 연금 분야와 의료보험 분야에 한정한다. 시기적으로는 각 분야의 사회보험제도가 형성된 시기가 중심이 될 것이다. 즉 연금 분야에 있어서는 1946년부터 1948년이 될 것이고, 의료보험분야는 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던 1960년대 상반기가 연구 대상 시기가 된다. 해당 시기의 프랑스의 사회보장 상황, 도시 자영업자의 경제 사회적 인구학적 설명, 도시 자영업자 사회보장 형성을 둘러싼 논의들, 논의의 기제 및 그 결과 등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본 논문의 마지막 부분은 한국에 줄 수 있는 시사점에 나름대로 정리해 볼 것이다.

II. 프랑스 도시 자영업자 사회보장 제도 개관

현재 프랑스 경제 활동 인구 중 자영업자 즉 비임금 근로자는 약 2백 5십만으로서 약 10%를 차지한다. 그 중에서도 농촌 지역의 자영업자를 제외하면 약 백 8십만을 헤아린다 (cf. Jean-jacques Dupeyroux, 1998 : 163). 이들은 다시 직업의 성격상 크게 4부분으로 구분된다. 수공업자 집단, 상인 집단, 기업의 경영주(10인이상 고용), 전문직 종사자 등이 바로 그것인데, 사회보장 체제 적용 시에는 상인집단과 기업 경영주를 하나의 범주로 간주하여, 사회보장과 관련해서는 3개의 범주가 있다.

도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를 흔히 자율체제(Régimes autonomes)라 일컫는다. 여기서 체제라 함은 해당 제도의 적용범위, 가입요건, 보험료 부과, 급여의 종류 및 수준, 관리 운영 기관, 재원 충당 방식, 분쟁 해결 등 사회보장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임과 동시에 이의 법적 조직을 뜻한다 (Jean-Jacques Dupeyroux, 1998 : 98). 따라서 각 체제마다 방금 언급한 제반 사항에 대해 독자적 형태와 내용을 가지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민(구체적으로는 경제활동인구)의 취업 형태가 무엇이냐에 따라 자동적으로(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체제가 가입 시부터 결정된다는 것이다. 봉급생활자는 일반체제에, 공무원과 특수직 종사자인 경우는 특수체제에, 농촌 자영업자는 농업체제의 적용을 받게된다. 단 사회적 위험 중 가족부양은 적용인구 모두가 일반체제에 편입되어 있다. 그리고 산재 및 직업병 경우는 특수체제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공무원 및 특수직 종사자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대상자가 일반체제의 적용을 받고 있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표 1> 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

체제종류	일반체제	특수체제	자율체제	농업체제
주요적용대상자*	도시 및 농촌지역 봉급생활자	공무원 및 특수직 종사자	도시지역 자영업자	농촌지역자영업자

* 여기서 주요 적용 대상자는 의료 및 노령 보험 부문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사회적 위험의 종류에 따라서는 다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가족수당은 전국민이 일반체제에 포함되어 있음. 산재 및 직업병 분야도 공무원 및 특수직 종사자를 제외하고는 일반체제의 적용을 받게됨.

이 중에서 프랑스 도시 자영업자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체제와 관련해서 볼 때 도시 자영업자가 적용 받고 있는 체제는 두 가지이다. 우선 위에서 언급한대로 자율체제가 있다. 의료 보험 부문과 노령 및 장애 부문이 이에 해당되는데, 이들의 실시 년도는 노령 및 장애 보험은 1948년이고, 의료 보험은 1966년이다. 이 분야의 프랑스 사회 보험이 실시된 시점을 1930년으로 보면 상당히 늦은 편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자율체제는 여타 체제와 관리운영 및 재정 부문에 있어서 독자성을 견지하고 있다. 이를 분야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의료 보험 분야에 있어서 단수의 자율체제가 운영되고 있다. 관리 운영 조직으로는 중앙의 비임금 근로자 의료 중앙 금고(Canam)를 정점으로 지역별로 행정 기구가 운영되고 있다. 경제활동 인구뿐만 아니라 퇴직자도 보험료 부과 대상이며, 급여 종류는 현금 급여는 질병 및 출산 양자 모두 적용되며, 현물 급여는 출산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한편, 노령보험은 의료보험에 비해 상당히 복잡하다. 왜냐하면 의료보험과는 달리 직업별로 서로 상이한 복수의 체제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공업자, 상인 및 기업 경영주, 그리고 전문직 종사자 등 3가지 종류의 자율체제가 바로 그것으로, 각 체제마다 재정 및 관리 운영 조직이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전문직 경우는 13개의 하위 체제로 다시 나뉘어져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도시 자영업자들은 의료 보험 분야와 노령 보험 분야에 있어서 자신들에 고유한 자율체제의 적용 하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여타 체제와 통합 없이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가족수당 및 임의 가입 사항인 산재 및 직업병 보험 분야의 경우, 일반체제 하에서 이가 규정하고 있는 기여율 및 수급자격의 적용 하에 있다. 그리고 실업보험은 임의 가입 형식으로 민간 보험 체제에 가입할 수 있다 (cf. Samuel Zaquin, 1998).

이상 논의를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표 2> 프랑스 도시 자영업자 사회보장제도

분야	관련체제	적용대상	관리운영조직(중앙기구)	사회복지역사종최초도입시기	도시자영업자대상 실시연도	여타체제와의 통합 및 연계 여부
의료	자율체제	도시자영업자전체	Canam	1930	1966	없음
노령(장애포함)	자율체제	수공업자집단	Cancava	1930	1948	없음
		상인및경영주	Organic			
		전문직종사자	Cnavpl			
산재및직업병	일반체제(임의가입)		Cnamts	1898		통합
가족수당	일반체제	도시자영업자전체	Cnaf	1932	1946	통합
실업	임의가입			1958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프랑스의 도시 자영업자 사회보장은 기본적으로 자율체제 하에서 운영되고 있다. 가족수당 경우는 일반체제에 가입되어 있으나 이는 비단 도시 자영업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민에 해당되는 것이며, 산재 및 직업병이나 실업 보험의 경우는 임의가입이 원칙으로서 도시 자영업자 사회보장 제도를 특징짓는 요소로서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 연금 및 의료 보험 분야에서 자율체제가 형성되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Ⅲ. 자율체제의 형성과정과 그 특징

1. 노령보험

1) 논의의 대두 배경 : 상황과 원칙의 혼란

프랑스 도시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보장 가입 논의는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직후인 1946년부터 시작되었다. 논의의 대두의 배경은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당시의 프랑스 사회보장 개혁이다. 1945년 8월의 종전 직후 당시 임시정부는 전쟁의 승리 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규모의 피해자인 프랑스의 재건을 위해 경제 및 사회 각 방면에 걸쳐 개혁 작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중 하나가 사회보장 분야의 개혁이었다. 당시 정부는 아래의 개혁 원칙을 설정하였다(P. Laroque, 1948 : 621-6242). 첫 번째 원칙은 보편주의 원칙으로서 '전 경제활동인구 및 그 가족'이 사회보장예로의 가입을 구상하고 있었다. 따라서 기존의 사회보험의 주 가입자였던 봉급 생활자(공무원 및 민간 부분 근로자)는 물론이고 사회보장과는 무관하였던 농촌 및 도시의 자영업자도 새로운 적용 대상으로 부각되었다. 여기서 한가지 지적해야 될 점은 자영업자의 사회보장 가입은 당장 실시되어야 될 것이 아니라 경제 상황, 경제 부흥 정도 등 국가의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시기에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서 그 실시 시기에 있어서 당시 정부는 상당히 신중한 태도를 보였었다. 한 예로 1946년 5월에 통과된 사회보장의 전국민 확대 적용에 관한 법 내용의 일부를 보더라도 당시 정부 및 의회를 이러한 입장을 잘 반영하고 있다. 사회보장의 전 국민 가입 실기에 대해 동 법의 제33조는 '노령보험은 산업분야의 생산지수가 1938년 대비, 110%에, 다른 분야는 125% 수준에 달했을 때 실시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Loi No.

2) 피에르 라로크(Pierre Laroque)는 당시 사회보장부 산하 사회보장실의 실장으로서 사회보장 개혁의 실질적 주체로서 '프랑스의 베버리지'라 불린다.

46-1146 du 22 mai 1946 portant généralisation de la Sécurité sociale, 제33조). 이를 기준으로 한다면 본격적 실시 시기는 1950년이 될 것이라는 게 당시의 예상이었다 (C.E.R.S., 1962 : 106). 단지 동법은 당시 경제적으로 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던 노인들을 위한 '노령 수당 (allocoation aux vieux)'은 노령 보험이 실시될 때까지 지급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제4장). 그러나 이의 재원 확보 방식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으므로 인해 이것이 보험 원칙에 근거한 것인지 아니면 부조 차원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웠고 이는 이후의 상황 전개에 하나의 불씨가 되었다.

사회보장 개혁의 두 번째 원칙은 제도의 운영 및 관리에 있어서 통합주의 원칙이었다. 기존의 가입자의 취업 형태 및 직종 별로 분산 운영되고 있었던 복수의 체제를 일반체제라는 하나의 새로운 체제로 재정비, 통합하자는 것이 당시 정부의 기본 구상이었다. 만약 이것이 실현된다면 기존 체제 즉 직장인들이 적용대상이었던 보통체제, 직장 간부들의 특별체제, 공무원들의 특수체제가 소멸되고, 일반체제라는 새로운 체제가 프랑스의 유일한 사회보장 체제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향후의 사회보장으로의 새로운 가입자 들 즉 자영업자들도 일반체제의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당시 정부는 기대하고 있었다.

위에서 언급한 사회보장 제도 개혁이 도시 자영업자의 사회보장 가입 논의의 근본적 배경이었다면 1946년 9월의 노령 보험의 전국민 확대 실시에 관한 법 조항에 명시되어 있는 노인들의 '노령 수당' 지급을 위한 재원 확보는 이의 직접적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동법은 노령보험의 실시를 1947년 1월부터 명시하고 있다. 이는 노령 보험 실시 시기에 대한 정부의 당초 구상을 벗어나는 것이었다. 그리고 노령보험의 운영 정상화가 될 때까지 정부는 '일시적 노령 수당'을 지급하기로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잠시 60세 이상의 노인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보면 약 4백 5십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1%을 차지한다. 이 중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집단이 경제 활동 당시 직종이 자영업자이었던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이들의 노후 보장 수단은 저축이나 민간 보험에로의 가입이었는데 당시의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다³⁾. 약 4백 5십만 명의 노인들 중에서 전직이 자영업자인 퇴직자는 약 백 8십만 명으로 추계되었다. 나머지는 충분히 살 여력이 있거나(약 5십만명), 전직인 봉급 생활자인 퇴직자 경우는 정규 연금의 혜택을 받고 있든지 (5십만명) 아니면 특별수당의 수혜자(백칠십만명)들이다. 따라서 앞에서의 1946년 9월의 노령 보험의 조기 실시에 대한 법에 언급되었던 '일시적 노령 수당'은 기본적으로 전직이 자영업자들의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도시 자영업

3) 당시의 정부 통계에 의하면 1938년 당시 물가를 100으로 하였을 때, 1945년의 물가 지수는 469으로 집계되었다 (Etudes et conjonctures, 1946 : 130)

자에 사회보장 가입 문제를 조기 쟁점화 시킨 것은 '노령 수당'의 재원 확보에 당시 정부의 입장이 었다. 이 부분에 대한 당시 정부 입장은 두 가지로 대변된다. 하나는 '노령수당'은 그 성격상 공적 부조 차원이 아닌 보험 급여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당시 연금의 운용 방식이 기존의 적립방식에서 수정부과방식으로 변경된 상황에서 전직이 자영업자인 노인들이 주 수혜자인 '노령 수당'의 재원은 현 자영업자의 기여금을 통해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것이다(P. Laroque, 1947 : 4).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여금을 통한 노령 수당 재원 확보에 대한 당시 정부의 집착은 후에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다 (Le Monde, 1947년 4월 6/7일자). 공적 부조로 판단하고 국가 예산 운용을 통한 방법은 과연 채택하기 어려웠을까 하는 점이다.

아무튼, 이러한 정부 입장은 도시 자영업자의 사회보장 가입 시기에 대한 종전의 입장을 바꾸어 놓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그때까지 사회보장 개혁에 무관심하였던 도시 자영업자 (특히 도시의)집단은 개혁 과정에 전면이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상 논의를 통해 당시 프랑스에서는 사회보장의 확대 적용을 둘러싸고 몇 가지 문제가 동시에 복잡하게 얽혔음을 알 수 있다. 우선 노인 복지 문제가 당시 초미의 관심사였다는 것이고 이의 해결을 위해 프랑스 전통적인 보험 원칙 사상과 베버리지적인 공적 부조 사상이 충돌하고 있었고 양자 중 프랑스 정부는 보험 원칙을 고수하고 있었다는 점, 마지막으로 당시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의 연금 운용 방식은 결국 도시 자영업자의 사회보장 가입에 대한 조기 쟁점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2) 도시 자영업자의 입장과 정부 반응

1947년 1월의 사회보장 가입에 대한 도시 자영업자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 부류는 사회보장 가입 자체에 대한 반대이며 다른 하나는 사회보장에 조건부 가입으로서 이들은 봉급 생활자가 대표적인 적용 대상인 일반체제의 적용을 받는 것을 반대한다. 이들에게서 볼 수 있는 공통적인 것은 일반체제의 적용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다. 이의 요인으로서는 우선 사회, 심리적 측면에서 직업으로서의 자영업자에 대한 강한 정체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자영업자는 직업적 성격상 다른 직업과는 달리 독립, 자율을 선호하는 반면 연대(국민적) 연대에 대해서는 강한 거부감을 가진 집단" (당시 한 도시 자영업자 단체 대표자인 Bony의 의견, cf. Les archives orales de la Sécurité sociale, 37AS 2 : 14))으로서 일반체제의 적용은 자신이 봉급 생활자와 동일 시 되게 될지도 모른다는 데에 대한 우려감이 강하게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요인은 결정적인 것으로서 기여율 책정 방식에 있어서 불공평성을 이들은 지적하고 있다. 여기서 잠시 1946년

말 당시 정부가 결정하였던 사회보장 기여율을 살펴보면, 일반 봉급 생활자에 대해서는 소득의 16%를 부과하고 있다. 노사 양자 부담 원칙에 의해 6%는 근로자 부담, 10%는 사용주가 부담하게 된다. 사용주 부담 비율 중 4%는 전직이 봉급생활자 퇴직자에게 지급되는 '특별 수당'의 재원으로 활용될 것이다. 반면 도시 자영업자의 경우는 최초 가입 분야인 노령 보험에 한해서 소득의 9%를 부과하고 있다 (Le Monde, 1947년 1월 26-27일자). 여기서 도시 자영업자들이 문제시하였던 것은 9% 부과 근거이다. 이것이 만약 정부의 의도대로 전직이 자영업자인 노인들에게 지급될 '노령 수당'의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면, 봉급 생활자와 마찬가지로 4% 부과가 마땅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노사 양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봉급 생활자와는 달리 자영업자는 전액 독자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상황은 더욱 더 기여율의 부당성을 자극하는 요인이 되었다. 결국 정부 측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기여율 9% 부과 결정은 일반체제 가입에 대한 도시 자영업자의 반대를 가져오는 결정적인 요인으로서 작용하였다.

게다가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저축 등 주로 개인적 차원에서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데 익숙하였던 도시자영업자들에게 사회보장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한 정부의 홍보 활동이 미흡하였다는 것이 당시 언론의 견해를 볼 때 (CF. Le combat, 1947년 4월 16일), 이에 대한 당시 정부의 안일주의도 사회보장의 일반체제 가입에 대한 도시 자영업자의 근본적 거부 반응을 낳는 하나의 배경적 요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46년 10월경부터, 도시 자영업자는 이러한 입장을 가시화하고 정부에 대해 압력을 가하기 위해 수공업자단체, 상인 및 경영주단체, 전문직 단체 등이 개별적으로 혹은 연합하여 파업, 시위 등의 실시하였다. 반대 행동 중 가장 결정적인 것은 연합 단체의 결정에 의해 행해진 보험료 납부 거부 운동이었다⁴⁾. 정부의 당초 계획은 1947년 1/4분기 동안에 도시 자영업자의 사회보장 가입과 첫 번째 기여금 납부가 이루어지는 것이었으나 이 시기의 보험료 납부 실적은 극히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당초 계획을 포기하고 대신 특별 위원회를 소집, 도시 자영업자의 사회보장 가입을 둘러싼 조치 등에 대한 토의, 연구를 위임한다.

3) 자율체제의 성립

당시 위원회의 위원장이었던 Surleau의 이름을 따 Surleau 위원회라고도 불리는 이 특별위원회는 1947년 4월부터 7월까지 3개월 동안 활동을 계속한다. 정부측 인사, 도시 자영업자 대표, 봉급

4) 이 운동은 1947년 4월에 결성된 당시 중간계급 이익 옹호 연합 단체인 <<중간 계급 연계 및 행동 위원회>>에 의해 주도되었다.

생활자 대표 등 모두 43명으로 구성된 활동 결과, 다음 몇 가지 사항을 결정한다(Rapport de Lory, 1947).

첫째, 노령보험 분야에 있어서 사회보장 일반체제와는 다른 도시 자영업자 고유의 체제를 구성한다. 이 체제는 관리 운영면에서나 재정적 측면에서 일반체제에 대해서 자율성을 가질 것이다.

둘째, 자율체제 하에 유사한 직업별로 3개의 하위 체제를 구성한다. 수공업자집단체제, 상인 및 경영주 집단체제, 전문직 집단 체제가 바로 그것으로, 각 체제는 구성을 위해 별도의 위원회를 운영하여 세부사항을 결정한다⁵⁾.

셋째, 기여율 결정 및 소득 상한선 책정은 국가의 개입을 요청한다.

위원회의 이러한 결정을 토대로 한 관련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고(1948년 1월), 3개의 하위 체제는 해당 위원회 활동을 통해 구체적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예를 들어 관리 운영을 위한 조직에 있어서, 수공업자 집단은 중앙에 수공업자 노령 보험 중앙 자율 금고(CANCAVA)를 정점으로 지역별 혹은 직업별 기구가 설치되며, 상인 및 경영주 체제도 중앙에 중앙금고(ORGANIC) 산하에 14개의 직업별 금고가 운영 조직되며, 전문직 집단 체제도 14개의 직업별 금고와 각 지역에는 공제조합이 일선 행정 기관으로 활동하게 될 것이다. 단 전문직 집단 체제의 14개 직업별 금고는 재정 면에 있어서 독립 재산제 방식이 도입될 것이라는 점이 특이한 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체제는 이 후 커다란 변화 없이 현재까지도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전국민의 일반체제 적용을 통한 국민적 연대를 실현하고자 하였던 정부의 사회보장 개혁은 국민연대보다 직업적 연대를 선호하는 도시 자영업자의 반대에 부딪쳐 그 빛을 잃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의료보험

1. 논의의 대두 배경

도시 자영업자에 대한 의료 보험 가입 논의의 시작은 1963년대 초부터였다. 논의의 배경으로는 이들 집단의 사회보장 미가입에 대한 정부 및 사회의 높은 관심을 들 수 있다. 사실 도시 자영업자들 제외한 대부분의 경제 활동 인구 및 그 가족들은 이미 사회보장에 가입된 상태였다. 민간의 봉급 생활자들은 1945년부터 일반체제의 적용 하에 있었고, 공무원 및 특수직 공무원들은 의료 분야

5) 당시 도시 자영업자 인구 규모를 직업 집단별로 보면, 수공업자는 삼십오만명, 상인 및 경영주는 이백팔십만명, 전문직 종사자는 가장 적은 십만명으로 추산된다 (Le problème de la Sécurité sociale, 1947 : 24). 반면 농촌 자영업자는 이백이십오만명에 달한다.

는 일반체제에, 연금 분야는 그들 고유의 특수체제에 가입되어 있었다. 농촌의 자영업자 집단은 1951년의 노령보험에 이어, 1961년에는 의료보험에 있어서 사회보장이 실시되었다 (표3참조). 따라서 도시 자영업자는 당시 프랑스 사회보장제도 실시에 있어서 하나의 중대한 공백으로 인식되었다. 특히 1961년의 농촌 자영업자의 의료보험 실시는 도시 자영업자의 의료 보험 실시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키는 촉진제 역할을 하였다(Henri CULAUD, Michel LAGRAVE, 1970 : 129)

<표 3> 취업 형태별 사회보장 가입 추이* (1945년-1963년)

	분야	체제	가입 연도	비고
민간봉급생활자	노령보험	일반체제	1946	
	의료보험	일반체제	1946	
공무원	노령보험	특수체제	1924	1853년 일부 공무원 대상 연금실시
	의료보험	일반체제	1947	
농촌 자영업자	노령보험	농업체제	1951	
	의료보험	농업체제	1961	
도시 자영업자	노령보험	자율체제	1948	
	의료보험			미가입

* 노령보험과 의료보험의 경우임. 여타 분야는 여기서는 취급하지 않음

이러한 공백은 공제조합 혹은 보험 회사 등의 자발적 민간 보험의 발달이 보충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연령, 건강 상태 등 까다로운 조건 등을 충족하여야만 하였다. 다른 한편 임의 가입 형태로 일반체제에 보호 하에 있는 도시 자영업자도 있었으나 그 수는 얼마되지 않았다. 결국 도시 자영업자 중 약 80%는 수술비에 대해서만 민간 보험을 통해 보호받고 있었으며, 좀 더 광범위한 보호 하에 있었던 비율은 전체 55%에 불과하였다. 더구나 민간 보험에 의한 보호는 의료비의 증가로 절대적으로 불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Lucien LUCENET, 1970 : 21)

여기서 잠시 당시 도시 자영업자 인구 분포를 보면 약 2백만으로서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었다⁶⁾. 이러한 비율은 1945년에 비하여 줄어든 수치이나 가족까지 합치면 4백만을 상회한다.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숫자가 사회보장 범위 밖에 놓여 있었으며, 국가적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보호 필요성은 점점 증대되었다.

2. 도시 자영업자의 사회보장 가입 형태 논의

6) 이들 중 상인 및 경영주 집단이 차지하는 비율은 60%, 수공업자 33%, 전문직 종사자가 약 7%를 차지한다. (Cf. Eugène Dary, 1970 : 27)

도시 자영업자의 사회보장 가입 원칙에 있어서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면, 가입 형태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정치 및 사회 관련 단체마다 서로 다른 대안을 제시하였다.

1) 일반체제의 적용 주장 : 정부의 입장

이 주장은 노동 및 사회보장부와 자영업자 대표 단체 중 수공업자 연합회와 중소기업 건설 협회에 의해 제안된 것으로, 도시 자영업자는 봉급 생활자와 마찬가지로 사회보장 일반체제의 적용하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호도 원칙적으로는 봉급 생활자와 유사한 것이 될 것이며, 다만 과도한 기여금 부과를 피하기 위해 현금 급여 부문에 있어서 약간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행정 기구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일반체제 행정기구가 담당하며 경우에 따라서 공제조합간의 유기적 관계도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의 지지자들은 일반체제에 편입됨으로써 새로운 체제 구성이 가져올 수 있는 행정적인 복잡성, 관리비의 추가 부담 등의 문제점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Henri CULAUD, Michel LAGRAVE, 1970 : 130).

2) 도시 자영업자 단체의 반응과 입장

수공업자, 상인 및 경영주, 전문직 종사자로 구성된 도시 자영업자 집단은 1963년, <<중간 계급 연계 및 행동 위원회>> 산하에 전국 연구 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문제에 대한 토의, 연구를 본격화하였다. 그 결과 1963년 11월 다음과 같은 입장을 천명한다. 우선 사회보장에 대한 의무 가입에 대한 동의를 표하는 반면 일반 체제 가입에는 명백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 이의 이유로는 일반 체제는 보호의 적실성, 가입자에 의한 보험 행정 기구의 자율선정, 자율적인 행정 기구를 원하는 도시 자영업자의 희망과는 배치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도시 자영업자 대표 단체는 1961년에 이미 일반체제로의 가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검토한 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토 결과, 그들의 소득에 비해서 터무니 없이 많은 기여금을 납부하게 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뿐만 아니라, 행정 기구 관리에 있어서 도시 자영업자 소유의 이해관계는 봉급 생활자의 이해 관계에 의해 지배당하게 될 것을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Lucien LUCENET, 1970 : 21).

결국, 동 위원회는 명확한 의견 피력은 아니지만 1947년과 마찬가지로 세 집단에 각각 고유한

7) 중간 계급 연계 및 행동 위원회(Comité national de Liaison et d'Action des Classes Moyennes)는 1947년에 결정된 단체로서 당시 도시 자영업자의 보험료 납부 거부 운동을 주도한 단체이다.

체제 구성을 희망하는 의견을 제시한다. 왜냐하면 각 집단 별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각집단 욕구에 가장 잘 부합하는 체제 구성 절차, 의무 사항, 적용 양식 등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기여금 부과에 대해서도 동 위원회는 과도한 부담을 우려하여 보호 범위를 주요 위험에 국한시킬 것을 제안한다.

노령보험 실시 때와 마찬가지로, 의료 보험에 있어서도 도시 자영업자는 직업적 연대에 대한 그들의 강한 애착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3) 정당의 입장

이에 대한 정당의 입장은 4가지로 나뉘어진다. 우선 일부 공산당 소속 국회의원은 전문직 종사자에 대해서는 언급 없이 수공업자와 상인 및 경영주의 2개의 새로운 체제 구성을 권고하고 있다. 단 운영 기구에 관해서는 별도의 기구를 새로 조직함이 없이 기존의 노령 보험 운영 기구가 담당할 것을 제의하고 있다. 두 번째는 사회당 소속 의원의 입장은 훨씬 더 도시 자영업자의 입장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보험자 선정에 있어서 가입자의 자유 원칙을 주장한다. 이는 법안에 나타나 있는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자신들 고유의 체제를 관리하고자 하는 이해당사자들의 희망에 부응하기 위해서”이다. 세 번째 입장은 일반 체제의 도시 자영업자 집단까지 확대 적용으로서 좌파 계열 소속의 일부 국회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마지막 입장은 이상 세 가지 입장의 절충형이자 원칙론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즉 도시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보장 확대 적용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동의하는 반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관련 사회 단체와의 협의와 입장을 고려하여 결국은 봉급 생활자와는 구분되는 해결방안이 제시될 것을 권고하고 있다(Roger Millot, 1970 : 18).

이렇게 볼 때, 각 정당의 대체적인 입장은 도시 자영업자에 고유한 체제를 구성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도시 자영업자의 의료 보험 실시 방식을 두고 정치, 사회 단체별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이는 마치 1947년의 상황과 유사한 점이 많다. 하지만 정부 입장에도 불구하고 도시 자영업자 고유의 체제 구성이 당시의 지배적인 견해로서 이는 결국 정부 입장의 변경을 가져오게 되는데, 1966년에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은 이의 반증이라 할 수 있다.

3. 자율체제의 구성

1966년의 정부안을 토대로 동년 7월에 통과된 <<비농업 비임금생활자 대상 질병 및 출산에 관한 법>>은 기본적으로 도시 자영업자의 입장을 아주 많이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선 동 법은 도시 자영업자 고유의 자율적인 체제구성을 명시하고 있다(제33조). 다만 노령 보험과는 달리 한 가지의 체제 구성을 명시하고 있는 점이 다를 뿐이다. 기여금 부과는 가입자간의 연대 원칙이 적용되어 가입자의 가족 부담이나 건강 상태와는 무관하게 소득에 의해 결정된다. 여기서 잠시 당시 도시 자영업자의 소득을 보면 고소득자(소득 3만프랑이상)는 전체의 15%를 차지하며, 중간소득자는 25%, 만삼천프랑 이하의 하위 소득자는 전체 기준 60%를 차지하여 하위 소득자의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 이를 직업 집단별로 보면 수공업자의 65%, 상인의 60%가 하위소득자의 범주에 포함된다. 반면 이들 중 고소득자에 포함되는 비율은 10%, 15%로서, 전문직에 비해 수공업자와 상인의 소득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급여 수준과 범위에 있어서는 상당히 제한적임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전통적으로 자발성에 기초한 보호 제도에 익숙한 도시 자영업자의 과도한 기여금 부과에 대한 반발을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조치로 이해된다. 그 내용을 보면 성인의 경우에는 중한 질병의 경우에만 급여가 지급되고, 확대 적용은 14세 이상의 아동과 65세 이상의 노인만 그 대상이 된다. 이러한 낮은 보호 수준은 1970년 법 개정을 통해 개선된다.

마지막으로 행정 운영 기구에 있어서, 지역단위의 공제 금고와 중앙 금고가 이를 담당하며 각 기구마다 가입자 대표로 구성된 행정 위원회가 구성되며 주요 업무를 결정한다. 단 이들 기관의 과도한 행정 업무 부담을 피하기 위해 보험료 징수 및 급여 지급 업무는 공제조합과 일정한 자격을 갖춘 보험회사에 위탁한다. 그리고 가입자는 자유롭게 보험료 납부와 수급을 위한 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도시 자영업자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어, 자율체제의 구성, 가입자의 행정 기관 자율 선정, 낮은 수준의 기여율과 급여 지급을 통한 보험 원칙과 직업적 연대의 절충 등이 가시화된 것이 동법의 주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동법의 내용은 이 후 1970년 법 개정을 통해 많은 변화를 겪기도 하였으나⁸⁾ 자율체제 자체는 그대로 유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동 법에 따라 2년 반 정도의 준비 기간을 거쳐 1969년 초부터 기여금 부과 및 납부가 이루어지고 동년 4월 1일부터 급여 지급 업무가 실시되었다.

8) 주요 변화 내용은 급여 수준의 개선, 재원 총당 방식에 있어서 국가 개입(부담), 지역 공제 행정 기구의 업무 조정 등이다 (Lucien LUCENET, 1970 : 24-26)

IV. 결 론

프랑스 도시 자영업자 집단의 사회보장제도의 형성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의 몇 가지 특징을 지적한다면 우선 프랑스 사회의 전통적인 사회 균열 현상을 들 수 있다. 흔히 '조합주의'로 대변되는 프랑스인들 사이에 뿌리 박혀 있는 계급간 혹은 집단간 분리 현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심각하다. 특히 일반 봉급 생활자(특히 노동자)와의 관계에서 일정 부분 구별 짓기를 원하는 중산계급, 자영업자의 입장은 상당히 강한 것으로 파악된다. 두 번째, 하나의 정책에 대해서 정치 사회 집단간에 첨예한 이해관계가 발생하였을 때, 이의 해결 기제로서 '특별 위원회'의 소집이다. 해당 정치 사회 집단의 대표자들로 구성되는 이 위원회의 활동 과정을 살펴보면 실질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 몇 개의 소위원회(이에는 항상 기술 위원회가 있음)를 구성하는 등 다방면에 걸친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그래도 그나마 이질적인 프랑스를 현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이 특별 위원회 덕분이라는 한 학자의 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도시 자영업자의 일반 체제 가입 반대에 정부의 대응 양식에 있어서 정부 정책의 혼선, 성급한 정책 선택 등을 지적할 수 있다. 당시 사회보장 개혁에 있어서 통합 주의 원칙의 실현은 당시 개혁 주체들의 양보할 수 없는 주요 원칙 중의 하나였다. 하지만 이러한 원칙이 도시 자영업자 사회보장 가입을 둘러싼 논쟁이 발생하였을 때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것을 목격한다. 정부측의 입장대로 당시 '노령수당' 재원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다른 경로를 통한 재원 확보의 가능성에 대한 진지한 고려의 부재, 당시 이미 2년이 지난 사회보장 개혁을 가능한 빨리 종결짓기를 원하는 개혁 주체들의 성급성, 관료성 등도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로 생각된다.

그럼, 현재적 관점에서 자율체제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 이는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독립과 자율을 선호하고 국가적 연대보다는 집단 연대에 더 많은 의미를 두는 도시 자영업자의 희망에 따라 성립된 자율체제가 운영된 지 노령보험 경우는 약 50년, 의료보험은 30년이 경과하였다. 현재적 관점에서 자율체제를 평가한다면 장점보다는 문제점이 더 많이 지적되고 있다. 우선 다른 어느 체제보다 재정 문제의 심각성이 두드러진다. 특히 연금 분야의 심각성은 인구학적 분포를 생각하면 앞으로 더 심화될 것이 확실하다. 즉 체제 별 현 가입자와 퇴직자의 비율을 보면 전문직 종사자를 제외하고는 자율체제가 퇴직자에 대한 가입자의 재원 부담이 가장 높다⁹⁾. 이는 그만큼 자율체제의 건전한 재정 운영에 적신호가 될 것이다. 그리고 전체 사회보장 운영에 있어서 자율체제의 존재는 현대 복지 국가의 주요 문제점 중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소득

분배의 역진현상을 주도하고 있다. 이는 1974년도에 제정된 체제간 보상에 관한 법의 실시와 관련된 사항으로 이 법의 제정으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체제 유지를 위해 다른 체제에서 일정 부분 재정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래서 주로 재정 지원을 해주는 체제는 일반 봉급자의 일반체제인 반면, 재정 지원의 수혜자는 자율체제인 것이다. 여기서 문제는 일반 봉급자의 소득과 자율체제 가입자의 소득이다. 통계에 따르면 자율체제 가입자의 평균 소득이 일반 봉급자의 평균 소득보다는 결코 낮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보면 일반체제의 자율체제 재정 지원은 소득의 역진적 배분으로 이해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어떤 면에서 보면 직업적 연대는 국민 연대에 커다란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사회보험 통합을 논의하는데 사회보장 근본 취지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통합모형과 조합주의 모형이 실시되었을 경우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인구학적 차원에서의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 위원회의 활동이 절실하며,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정부 및 학계의 관심 증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겠다.

9) 체제별 퇴직자에 대한 가입자 비율의 추이는 다음과 같다.

체제	집단	1978	1985	1990	1995
일반체제	봉급생활자	3.24	2.54	2.11	1.77
특수체제	공무원	3.2	3	2.75	2.35
농업체제	농촌자영업자	1.15	1	0.6	0.4
자율체제	상인및 경영주	1.27	1.2	1.04	0.91
	수공업자	1.8	1.65	1.37	1.08
	전문직종사자	4.55	4.56	4.11	3.63

출전 : Jean-Jacques Dupeyrou, 1998 : 216에서 재인용

참 고 문 헌

1. 단행본 및 논문

- C.E.R.S., "Les travailleurs indépendants" in *Sécurité sociale et Conflits de Classes*, Paris, Les Editions Ouvrières, 1962, 75-99.
- CULAUD, Michel, LAGRAVE, Michel , "Analyse", *Droit social*, Mars 1970, 130-148.
- DARY, Eugène, "Evaluation et caractères distinctifs des trois grands groupes socio-professionnels", *Droit social*, Mars 1970, 28-31.
- Dupeyroux, Jean-Jacques, "Introduction", *Droit social*, Mars 1970. 3-6.
- Dupeyroux, Jean-Jacques, *Droit de la sécurité sociale*, Paris, Dalloz, 1998.
- JAMBU-MERLIN, Roger, "Le problème de la sécurité sociale des travailleurs non salariés aux lendemains de la libération", *Droit social*, Mars 1970, 11-16.
- LAROQUE, Pierre, "Généralisation de la Sécurité sociale : l'extension de l'assurance-vieillesse aux artisans, commerçants et membres des professions libérales", *Notes documentaires et études*, No.583, Mars 1947, 3-8.
- ___, "De l'assurance sociale à la Sécurité sociale : l'expérience française". *Revue internationale de Travail*, Vol., LII, No.6, juin 1948, 621-649.
- LUCENET, Lucien, "Création, évolution et réforme du régime d'assurance-maladie des travailleurs indépendants" *Droit social*, Mars 1970, 21-26.
- Millot, Roger , "La position des travailleurs indépendants face aux problèmes de l'assurance-maladie avant l'adoption de la loi du 12 juillet 1966", *Droit social*, Mars 1970, 17-20.
- Zaquin, Samuel , *La protection sociale des non-salariés*, Paris, Editions Liaisons, 1998.

2. 1차 자료

- 미상, "Le problème de la SECURITE SOCIALE", *Etudes et conjoncture Uuion Française*, No.12, Juillet 1947, 21-34.